Yeosu
Web Contents

2024년 04월 29일 17시 45분

목차

목차 2
공지사항 3
(2022.3.16.**기준)코로나**19 **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(지원종료)** 3

(2022.3.16.기준)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(지원종료)

2022.03.22 조회수 4,246 담당부서 관리자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--1-99-2-12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해 입원·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하여 유급휴가비용지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('22.3.16.변경내용 반영)

□ 지원개요

○ 신청자격 :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

○ 지원금액 : 1일 최대 45,000원, 최대 5일

○ 신청기관 :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

☞ 사이트바로가기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main.jsp

○ 신청기한 :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○ 신청서류 : 신청서, 격리통보문자 캡처본,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, 통장사본, 중소기업확인서 등

○ 신청방법 : 팩스, 우편, 방문신청

□ 지원개요(요약)

구분	유급휴가비(사업주)	생활지원비(개인)
신청자격	코로나19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**사업주**	코로나19입원·격리 **통지서를 받은 자**
지원금액	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 해당 분**(1일 최대 45,000원, 최대 5일)**	1인 10만원, 2인 이상 15만원
신청기관	**상담전화 : 질병관리청콜센터 1339** **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** (전화)660-5583 (팩스)900-7043	**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**
신청기한	**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(90일) 이내** 단, 유급휴가비는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	
신청서류	①신청서 ②입원·격리통지서(보건소 통보문자 가능) ③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④사업장 통장사본 ⑤중소기업(소기업, 소상공인포함)확인서 1부	①신청서 ②신청인명의 통장사본
신청방법	**팩스, 우편, 방문신청**	
지원 제외 대상	**(공통) ▲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제외** ▲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▲해외입국 격리자 ▲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**(생활지원비)** 기관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	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유급휴가+부여+및+사용+확인서.hwp (856 hit/ 15.5 KB) 미리보기

유급휴가+지원+신청서.hwp (951 hit/ 19.0 KB) 미리보기

코로나19+관련+유급휴가비용+설명자료(국민연금공단).pdf (812 hit/ 449.9 KB) 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
2022년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·장비 및 고…

다음글
SAVE THE PLANET 공연 안내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